

제67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

1 이사회 개최 개요

- 일 시 : 2023. 12. 20.(수) 14:00 ~ 15:30
- 참여인원 : 총16명 중 13명 참석(이사 12명, 감사 1명)
 - ▶ 참석(이사): 이성운, 이정숙, 고운기, 김영구, 김영애, 민화식
신영철, 장성희, 조성제, 차현주, 한규석, 한태섭
 - ▶ 참석(감사): 이영분
- 회의진행
 - ▶ 사회자 : (재)안산문화재단 기획감사실장
 - ▶ 회의주재 : (재)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
 - ▶ 심의안건 제안설명 : (재)안산문화재단 기획감사실장
 - ▶ 안건심의 및 의결 : 참석이사 전원
 - ▶ 폐회 : 참석이사 전원

2 이사회 개최 내용

- 심의안건 : 5건
 - 의안제2023-30호: 계약직원 관리규정 폐지 및 기간제 관리규정 일부개정 개정(안)
 - 의안제2023-31호: 인사규정·임원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(안) 심의 건
 - 의안제2023-32호: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강령(안) 심의 건
 - 의안제2023-33호: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(안) 심의 건
 - 의안제2023-34호: (재)안산문화재단 비상임 선임직 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
- 보고안건 : 2건
 - 제66차 이사회 개최 결과보고의 건
 - 제80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의 건

3 안건 심의 결과

○ 의안제2023-30호: 계약직원 관리규정 폐지 및 기간제 관리규정 일부개정 개정(안) : 원안가결

▶ 주요내용

규정명	개정조항	개정 내용
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	제명 변경	-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」으로 변경
	안 제2조(정의)	- 기간제근로자 구분 명확화
	안 제5조(근로기간)	- 기간제근로자 구분에 따른 조정
	안 제6조(채용)	- 직원 공개채용 예외조항 삭제 - 근로자 채용 및 등록 시 제출서류 명확화
	안 제7조(채용자격기준)	- 연령제한 및 채용우대 조항 삭제 - 기간제근로자 구분에 따른 채용 자격기준 명시
	안 제8조(결격사유)	- 인사규정 기준 적용
	안 제9조(채용공고)	- 공고매체 명확화
	안 제10조(채용시험)	- 시험위원 자격 구체화
	안 제11조(근로계약)	- 일반기간제 및 한시기간제 근로계약 구분
	안 제12조(채용자료보관)	- 채용자료 영구 보관으로 개정
	안 제21조(복무), 안 제22조(근무시간)	- 대표이사 직속부서의 경우 허가권자 명시
	안 제23조(지각, 조퇴, 외출)	
	안 제29조(특별유급휴가), 안 제30조(병가)	- 복무규정 기준 적용
	안 제33조(보수)	- 일반 및 한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일 등 구분
안 제38조(근무성적 평정)	- 일반 및 한시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 평정 방법 구분	
계약직원 관리규정	폐지	

○ 의안제2023-31호 인사규정·임원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(안) 심의 건 : 원안가결

▶ 주요내용

규정명	개정 조항	개정 내용
인사규정	안 제4조(직원구분)	- 직원의 구분은 직제 및 정원규정에 따름
	안 제11조(채용의 원칙)	- 공개채용 정비 및 차별 제한 규정 신설 - 통합채용 시 절차와 기준 우선 사항
	안 제12조(경력채용)	- 특별채용 삭제 및 경력채용 구체화
	안 제14조(채용연령제한)	- 삭제

규정명	개정 조항	개정 내용
	안 제15조(결격사유)	- 피한정후견인 삭제 - 지방공무원법 적용 결격사항 구체화
	안 제17조(계약직 채용)	- 조항명 변경 및 계약직 직원 내용 삭제
	안 제26조(직위해제)	- 형사사건 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추가
	안 제30조(승진의 제한)	- 징계 등 무료(취소) 시 소급 승급 신설
	안 제32조의2(휴직자의 복무관리)	- 휴직자 복무관리의 세부기준 마련
	안 제32조의3(휴직 중 복무상황 점검)	
	안 제32조의4(휴직의 목적의 사용금지)	
	직급별 채용자격기준	- 채용자격기준 구체화
임원인사규정	안 제5조(임기 및 직무)	- 대표이사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 추가

○ 의안제2023-32호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강령(안) 심의 건 : 원안가결

▶ 주요내용

- 「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함. 10만원 → 15만원 / 설날·추석기간: 20만원 → 30만원
- 선물범위를 ‘물품 및 용역상품권(금액상품권은 제외)에 한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함

○ 의안제2023-33호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(안) 심의 건 : 수정안가결

- 제5조 ① 삭제, 제16조 ① 삭제, 제21조 ①, ②, ③항을 1, 2, 3호로 변경

▶ 주요내용

- 규정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기부금의 종류 및 기부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)
- 기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내지 제10조)
- 기부금 채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내지 제16조)
- 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 내지 제25조)

○ 의안제2023-34호 (재)안산문화재단 비상임 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: 2인 추천